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문정복 · 김준혁
박희승 · 강준현 · 진선미
허성무 · 이광희 · 이수진
조계원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,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학원·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을 규제하고 있어, 실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이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.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예외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

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, 제14조 및 제16조 등).

주요내용

가.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음(안 제8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).

나.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편성·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(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4호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철 방학기간(이하 “겨울방학”이라 한다)에 편성·운영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한정한다)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(이하 “학원등”이라 한다)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겨울방학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변경명령”을 “변경명령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교육감은 학원등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

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) ① (생략)	제8조(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철 방학기간(이하 “겨울방학”이라 한다)에 편성·운영되는 경우에는-----.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·운영되는 경우	<삭 제>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	<삭 제>

③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시정 또는 변경명령) ①

~ ③ (생략)

<신설>

제16조(적용의 배제) 다음 각 호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한정한다)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(이하 “학원등”이라 한다)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겨울방학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교육감은 학원등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적용의 배제) -----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</u> 5. (생략)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<u><삭 제></u>
---	---